

혼인신고

- 구비서류 : 신고서 1부, 혼인당사자 도장, 신분증, 증인 2인 도장 또는 서명
- 신고기간 : 없음
- 신고자 : 혼인 당사자
- 접수처 : 구청·읍·면사무소, 출장소

혼인신고 후 조치사항 안내
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
- 접수처 : 전입할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, 출장소 또는 민원24(www.minwon.go.kr)



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인터넷 발급

대상

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, 제적 등·초본

홈페이지

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
(http://efamily.scourt.go.kr)

본인 확인방법

금융기관
공인인증서

수수료 _ 무료

개명, 성·본변경, 기타 정정신고

- 구비서류 : 신고서 1부, 허가결정등본, 신분증
- 신고기간 : 1개월 이내
※기한경과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신고자 :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
- 접수처 : 구청·읍·면사무소, 출장소

개명, 성·본 변경, 기타정정 신고 후 조치사항 안내

개명신청후 1주일 정도 되면 주민등록등·초본, 가족 관계 등록부 열람(발급)을 통하여 개명 확인 가능

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

- 주민등록증과 귀와 눈썹이 보이는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(3cmX4cm) 1장 지참 읍·면·동주민센터, 출장소에 재발급 신고
- 20일 정도후 새 주민 등록증 교부
- 필요시 임시 신분증은 즉시 발급 가능

기타 변경신청

- 인감변경(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주민센터, 출장소)
- 운전면허증교부(경찰서, 운전면허시험장)
- 여권 재발급(시·군·구청)
- 동기명의인 표시변경(등기소)
- 통장(금융기관)
※개명자의 개명전 이름이 관리·보관되고 있는 기관에 직접 변경신청
- 학생인 경우 재학중인 학교에 학적부(생활기록부) 변경신청

※본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가족관계 등록신고 관련 문의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 화원읍 민원팀 053)668-5440 | · 가창면 민원팀 053)668-5595 |
| · 논공읍 민원팀 053)668-5500 | · 하빈면 민원팀 053)668-5615 |
| · 논공공단출장소 053)668-5790 | · 옥포면 민원팀 053)668-5675 |
| · 다사읍 민원팀 053)668-5550 | · 현풍면 민원팀 053)668-5719 |
| · 다사서재출장소 053)668-2831 | · 유가면 민원팀 053)668-5740 |
| | · 구지면 민원팀 053)668-5770 |

생활속의~ 가족관계 등록



출생신고

- 구비서류 : 신고서 1부, 신분증
출생증명서(병원 또는 인우보증2인)
- 신고기간 :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
※기한경과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신고자 : 부 또는 모
- 접수처 : 구청·읍·면·동주민센터, 출장소
- 혜택 :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
(달성군 보건소 ☎668-3133)
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

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, 토지, 자동차, 세금 등의 **재산 확인**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, **한번의 통합신청**으로 문자·온라인·우편 등으로 **결과를 확인**하는 서비스입니다.

- 신고기간 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
- 접수처 : 전국 구청, 읍·면·동주민센터, 출장소
- 신청자 : 제1, 2순위 상속인
- 결과확인 : 7~20일 이내
(토지, 자동차, 지방세) 방문·우편·문자 중 선택
(금융, 국세, 국민연금) 개별홈페이지 확인

사망신고

- 구비서류 : 신고서 1부,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
또는 사망증명서(인우보증 2인), 신분증
- 신고기간 :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
※기한경과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신고자 : 동거친족, 비동거친족, 동거자,
기타(보호시설장, 사망장소, 관리장 등)
- 접수처 : 구청, 읍·면·동주민센터, 출장소

등록기준지 변경신고

- 구비서류 : 신고서 1부, 신분증
- 신고자 :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
- 접수처 : 새로운 등록 기준지
구청, 읍·면·동주민센터, 출장소

재산상속 포기신고

사망자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등도 상속이 되므로,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관할 법원에 신고해야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습니다.

- 신고기간 :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
- 접수처 : 관할 가정법원
▶대구가정법원 ☎570-1500

사망자 재산 조회

-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
• e-금융민원센터(www.fcsc.kr) 민원신청 >
상속조회안내
▶금융감독원 콜센터(1332)

- 사망자 토지소유 조회 -> 조상땅 찾기
▶달성군 토지정보과 ☎668-2071~4

부동산 상속등기

- 신고기관 : 물건지 관할 등기소
▶대법원 등기민원 콜센터 ☎1544-0773

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

- 신고기간 : 상속 개시일(차주 사망일)로부터 6개월 이내
- 접수처 : 차량등록사업소
※미신고시 최고 50만원 범칙금부과
▶달성군차량등록실 ☎668-3034~5
▶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본소 ☎749-1300

상속세금 및 국민연금 청구

- 취득세 신고 납부
•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
(기한 경과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)
▶달성군 세무과 ☎668-2381~8, 668-2391~6

- 상속세 신고납부
•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(기한경과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)
※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
▶남대구세무서 ☎659-0200
▶남대구세무서 달성민원실 ☎617-2100

- 국민연금(유족연금, 반환일시금, 사망일시금) 청구
▶국민연금 콜센터 ☎1335

영업자 지위 승계

-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
• 영업소 허가 관할 구·군청
▶달성군 청소위생과 ☎668-2751~5

- 식품영업영업자 지위승계 신고
• 영업소 허가 관할 구·군청
▶달성군 청소위생과 ☎668~2761~4

-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: 전국 또는 영업소 관할 세무서
▶남대구세무서 ☎659-0200
▶남대구세무서 달성민원실 ☎617-2100